

# 2017년 이사회회의록

1. 일 시 : 2017. 12. 21(목) 11:00

2. 장 소 : 법인회의실

3. 참석임원: 대표이사 장영순, 이사 이상주, 이사 이충호, 이사 홍인식,  
이사 황금복, 이사 권도국, 이사 신진상(총 7명중 7명 참석)

참석직원: 노희원교장, 손소희원장, 유준식원장, 진영근원장, 공보연원장,  
도경옥원장, 김인수법인국장

4. 심의안건: 제1호 2017년 추가경정예산(안)

제2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제3호 인천예림학교 일반행정직원 신규 임용건

## 5. 회의내용

### 1)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○ 장영순의장 :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### 2) 전차회의록 접수승인

○ 장영순의장 :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,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다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.

### 3) 안건심의

- 제1호 의안 : 2017년 추가경정예산(안)

○ 장영순의장 : 법인과 각 기관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일괄 상정의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각 기관별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- 김인수법인국장 : 법인의 2017년 2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손소희원장 : 예림원의 2017년 3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도경옥원장 : 예림공동생활가정의 2017년 3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공보연원장 : 예림일터의 2017년 3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진영근원장 : 한인해부평지점의 2017년 4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유준식원장 : 한인해동구지점의 2017년 3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김인수법인국장 : 인천예림학교의 2017학년도 제4회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장영순의장 : 주요추경사유는 결산 대비 정리추경이며, 각 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였음을 말하고 제안 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홍인식이사 : 법인과 각 기관의 추경예산(안)을 검토해보니, 사업의 변동에 따른 합당한 예산의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- 이상주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-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하다.

**- 제2호 의안 :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**

- 장영순의장 : 법인과 각 기관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에 대한 일괄 상정의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각 기관별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- 김인수법인국장 : 법인의 2018년 사업계획 및 대표이사 직책보조비를 포함한 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손소희원장 : 예림원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도경옥원장 : 예림공동생활가정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공보연원장 : 예림일터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입회계 세입예산액 520,000천원에서 자부담인건비 66,256천원, 관리운영비 106,041천원, 재산조성비

10,010천원을 책정한 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진영근원장 : 한인한부평지점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익금 중 349,246(천원)을 관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고, 18,141(천원)을 정부지원 직원의 추가인건비와 190,900(천원)을 자부담직원의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유준식원장 : 한인한동구지점의 2018년 사업계획 및 매출목표 45억 수립,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 중 325,146천원을 관리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고 64,572천원을 정부지원직원의 추가인건비로 책정한 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2018년 예산(안)은 2017년을 기준으로 세웠으며, 인천시의 2018년 예산 확정에 따라 1차 추경으로 조정할 것이며 각 기관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말하고 제안 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
○ 흥인식이사 : 2018년 법인과 각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(안)을 검토하니, 사업운영에 합당한 예산의 편성이고 인천시의 예산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건비 등은 1차 추경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
○ 권도국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하다.

**- 제3호 의안 : 인천예림학교 일반행정직원 신규 임용(안)**

○ 장영순의장 : 인천예림학교 일반행정직원 신규 임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김인수법인국장 : 인천예림학교 일반행정직원으로 서진숙씨를 신규 채용하여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제출된 인사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요청하다.

○ 이상주이사 : 서진숙씨를 인천예림학교 일반행정직원에 임용 할 것에 동의하다.

○ 이충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3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.

6. 폐회

- 장영순의장 :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,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2:00에 폐회하다.

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.

2017. 12. 21.

사회복지법인 손과손

대표이사

장영순

이 사

이상주

이 사

이충호

이 사

홍인석

이 사

황금복

이 사

권도국

이 사

신진상

손과손